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 〉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34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	2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9일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채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하고 있어 동일한 임금채권에 대해 민사적 권리구제기간이 형사적 제재기간보다 짧은 불균형이 존재함.

이로 인해 사업장 폐업, 장기간의 노동관계 분쟁 절차 등 현실적 제약으로 근로자가 시효 내에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소멸시효 경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형사상 공소시효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

Ⅲ. 검토의견

1.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안 제49조)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임(안 제49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u>3년간</u>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49조(임금의 시효) ----- ----- <u>5년간</u> ----- -----.

나. 검토의견

1974년 개정 전의 법에서는 임금채권의 시효가 2년이었으나, 현행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민법」상 급료채권의 단기소멸시효¹⁾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의 소멸시효²⁾와 동일함.

1)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따른 임금채불 관련 범죄(임금채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³⁾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은 경우 근로감독관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⁵⁾

이에 개정안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취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민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 4. (생략)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참고로, 2026년 3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는 임금채불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바,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 공소시효는 7년임.

5) 「임금채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2024.9.10. 실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문 중

현행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금료(給料)의 소멸시효⁶⁾와 동일하고, 헌법재판소는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일반 채권보다 단기로 규정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다른 일반채권들에 비하여 근로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어,⁷⁾ 이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일본 5년, 미국·독일·프랑스 3년, 영국 2년, 중국 1년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참고로, 동 개정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3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금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7) 현재 1998. 6. 25. 선고 96헌바27 결정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의 설정은 기업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것은, 민법상 일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인 10년보다는 짧으나 민법상 금료채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과 동일하고, 노역인·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년보다 긴 점, 임금 내지 퇴직금채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이 1974. 12. 24.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점, 근로자명부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민법 제165조가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시효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히 짧다거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다른 일반채권들에 비하여 근로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지급명령, 소 제기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10년의 시효기간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 등 특별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단기 시효를 연장할 경우 임금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은 커지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로내역 등의 입증에 곤란해지는 등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소멸시효제도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0